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공개 노력 강화 등》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47호)

2025.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 목 차

|                                                                            |   |
|----------------------------------------------------------------------------|---|
| I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제2211047호) .....                                            | 1 |
| 1. 제안경위 .....                                                              | 1 |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3. 검토의견 .....                                                              | 3 |
| 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공개 노력 강화 및 비공개 대상<br>공간정보의 세부기준 수립·공개(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 3 |

## I.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제2211047호)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5. 6. 24.

다. 회 부 일 : 2025. 6. 2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3. 검토의견

#### 가. 관리기관의 공간정보 공개 노력 강화 및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세부 기준 수립·공개(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br>-----<br>-----<br>-----하며,<br><u>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br>-----<br>-----. |
| <신 설>                                                                                                                                               | ② <u>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                                                                 |
| ② (생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제1항 본문은 관리기관<sup>1)</sup>의 장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sup>2)</sup>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관리기관의 장의 공간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안 제33조제1항)와 더불어,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할 의무(안 제33조제2항 신설)를 각각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적극적 공개 노력 의무 부여(안 제33조제1항)**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sup>3)</sup>하도록

---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현재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한 것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며,

같은 항 단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4)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목록 작성 대상

---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해오고 있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공간정보의 공개)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공간정보의 공개목록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sup>5)</sup>.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간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공간정보를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안전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땅꺼짐 또는 싱크홀(sinkhole) 등으로 통칭되는 지반침하<sup>6)</sup>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위험 정도 예측·판단을 위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sup>7)</sup>을 내림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행정불신이

---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권택기의원 대표발의, 제1800646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조.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시는 지반침하 위험등급을 산정한 ‘우선정비구역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국가공간정보 기

증가할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 주체인 ‘관리기관’이 생산하지 않은 이른바 ‘지반침하 위험지도’ 또는 ‘싱크홀 안전지도’<sup>8)</sup> 등이 공신력 있는 행정 정보로 오인되거나 대체정보로서 활용되고 있어,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정확성과 신뢰도가 담보되도록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공간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본법」 및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에 근거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경향신문, “서울시, ‘땅꺼짐 지도 공개’ 시민들 요구 끝내 거부”, 2025. 4. 29.).

한편, 부산광역시시는 2023년 10월 부산 내 주요 도로 1,500km 구간에 대해 ‘도로 함몰 안전 지도’를 제작한 바 있으나, 해당 지도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부산일보, “싱크홀 공포 커지는데 ‘도로 안전 지도’ 왜 공개 안 하나”, 2025. 4. 16.).

- 8) 서울특별시(서울시)는 “단독입수한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에 따르면, 각종 공공청사부터 오피스지역이 밀집한 도심권역과 강남권역, 그리고 서남권역인 강서·양천·관악구 지역이 위험 등급 5등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기사에서 보도된 지도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우선정비구역도’는 그 자체가 위험 등급을 나타내는 자료가 아니며, ‘공개제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음.(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지반침하 위험지도’>라고 공개한 자료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도가 아님” 해명자료, 2025. 4. 3.)

한편, 동아일보는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하여 “서울 싱크홀 안전지도”를 온라인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지도에 대하여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의 해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sup>9)</sup>의 규정과 정합성이 있다고 보이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sup>10)</sup> 등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생산한 침수흔적도,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또는 지진위험지도 등 각종 재해지도가 선제적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는 점<sup>11)</sup>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공개하여야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과 그 배후지역의 홍수피해 상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피해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며, 가뭄이 발생하여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바탕으로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제작·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내진설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정한 지진위험지도(이하 “국가지진위험지도”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 대한 지역지진위험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정보’ 내 ‘생활안전지도’에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는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에서, 같은 조에 따른 가뭄취약지도는 환경부의 ‘국가가뭄정보포털’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진위험지도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정보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제2211058호)<sup>12)</sup>의 심사 경과 등을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안 제33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안 제33조제1항과 종합하는 경우 공개해야 할 정보와 보호해야 할 정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 국민은 물론 관리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임.

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제2211058호)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p><b>제41조의2(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등)</b> ① 시·도지사는 지반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 지도(이하 “지반침하 안전지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

아울러, 안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반침하와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공간통합지도’<sup>13)</sup>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공개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지하공간통합지도”란 지하를 개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하정보를 통합한 지도를 말한다.
11. “지하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 중 지반특성, 지하시설물의 위치 등 지하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지하정보)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질정보: 암석의 종류·성질·분포상태 및 지질구조 등 지질을 조사하여 생산된 정보
2. 시추(試錐)정보: 지반의 특성, 지층의 종류 및 지하수위 등 시추기계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생산된 정보
3. 관정(管井)정보: 지하수의 수위분포,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등 관정을 통하여 측정된 정보
4.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의 위치·규모·용도 및 관리주체 등 현황에 관한 정보
  - 가. 제2조 각 호의 지하시설물
  - 나.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송유관

제2조(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1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의 일종으로서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별표 1]<sup>14)</sup>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 정보에 해당함.

국가기간시설은 테러 또는 전쟁 발발 시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공개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해외 사례<sup>15)</sup>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 현재도 적극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정보가 제공<sup>16)</sup>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안보 등의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14)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국토교통부훈령)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공간정보 | 등 급      | 분 류 기 준                                                                                                                                                                                                                                     |
|------|----------|---------------------------------------------------------------------------------------------------------------------------------------------------------------------------------------------------------------------------------------------|
| 전자지도 | 공개<br>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지도</li> <li>○ <b>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이 포함된 지도</b></li> <li>○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li> <li>○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li> </ul> |

1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공개를 엄격히 제한 중임. 보다 상세한 사항은 ‘참고 1’ 참조.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하안전평가기관, 지하개발사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제공되고 있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16. (생 략)

제44조(지하정보통합체계의 지원 및 활용) ③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 지역에서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안 제33조제1항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곧바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의무 부여(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33조제2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정보 세부 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표 1〉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과 안 제33조제2항 비교

|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                                                                                                                                      | 안 제33조제2항                                                                                              |
|-----------------------------------------------------------------------------------------------------------------------------------------------------|--------------------------------------------------------------------------------------------------------|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sup>17)</sup>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sup>18)</sup> 등을 참고할 때, 법령에서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비공개 기준이 보다 명확

17)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2.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4.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에 관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원자력안전정보
  - 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원자력안전정보
  - 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 라.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등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8)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각 호별로 구분하여 비공개 사유를 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비공개 사유는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알기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그 뜻을 밝혀 적을 것
4.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가. 적용 범위
  - 나.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주관·처리 부서
  - 다. 정보공개 관련 교육 및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라.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마.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의 수립·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정보세부기준을 확정할 것

해져 관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가 최소화되고 행정 투명성이 증진되며 공간정보의 비공개 사유와 범위 등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공간정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sup>19)</sup>에 따라 비공개정보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관리기관’의 범위는 동일하지 않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관리기관에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민간기관(민간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음.

관리기관 중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비공개정보 세부 기준 수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 제33조 제2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에 대해서까지 비공개정보 세부 기준 수립 의무를 적용할지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활동의 자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표 2〉 공공기관(「정보공개법」)과 관리기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범위 비교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 관리기관(「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국가기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li> <li>2) <u>중앙행정기관</u>(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li> <li>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li> </ol> </li> </ul>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중앙행정기관</u></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방자치단체</u></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지방자치단체</u></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공공기관</u></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공공기관</u></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u>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u>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u></li> <li>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u>출자기관 및 출연기관</u></li> <li>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u>특수법인</u></li> <li>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u>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u></li> <li>⑤ ‘④’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u></li> </o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전기통신사업자</u>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u>기간통신사업자</u></li> <li>②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도시가스사업자</u>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u>일반도시가스사업자</u></li> <li>③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송유관설치자</u>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u>송유관관리자</u></li> <li>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u>사업자</u></li> </ol> </li> </ul> |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sup>20)</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sup>21)</sup>에 따라 각 관리기관별로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의 비공개·공개제한·공개 범위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며, 각 보안관리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고 있어,

현행 제도 상으로도 개정안에 따른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수립 및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익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78

2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공간정보의 보호)** ① 법 제35조에 따른 보안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관리부서 및 공간정보 보안담당자 등 보안관리체계
2. 공간정보체계 및 공간정보 유통망의 관리방법과 그 보호대책
3.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절차
4.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5. 보안대상 공간정보의 유출·훼손 등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및 처리방법

## 참고1

## 지하시설 관련정보 데이터 보안관리 해외사례

※ 자료: 국토교통부

### 1. 관련법령

- 우리나라 외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지하시설물 등 기반 인프라의 공간정보는 공개제한으로 보호하고 있음.

| 국가       | 법령                                              | 담당<br>부처/부서            | 관련 조문                     | 사이트                                                                                                                                                 |
|----------|-------------------------------------------------|------------------------|---------------------------|-----------------------------------------------------------------------------------------------------------------------------------------------------|
| 대한<br>민국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토교통부 /<br>국토정보정책관     |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br>판매 등)  | <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                                                                                           |
|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br>기본지침<br>/ 국토교통부<br>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국가정보원<br>/ 국토교통부       | [별표1]<br>공간정보의<br>분류      | <a href="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a>                                                                                           |
| 미국       | Homeland Security Act<br>§ 201(d)               | 국토안보부(DHS) / CISA      | FOIA<br>Exemption<br>7(F) | <a href="https://www.justice.gov/oip/foia-guide-2004-edition-exemption-7">https://www.justice.gov/oip/foia-guide-2004-edition-exemption-7</a>       |
|          | FOIA Exemption 7(F)                             |                        | -                         | <a href="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bill/5005/text">https://www.congress.gov/bill/107th-congress/house-bill/5005/text</a>   |
| 독일       | IT-Sicherheitsgesetz § 8a                       | 연방내무부<br>(BMI) / BSI   | § 8a 보호조치<br>의무           | <a href="https://www.gesetze-im-internet.de/it-sig">https://www.gesetze-im-internet.de/it-sig</a>                                                   |
|          | BSI Grundschutz Manual                          | -                      | -                         | <a href="https://www.bsi.bund.de/EN/...">https://www.bsi.bund.de/EN/...</a>                                                                         |
| 영국       | Official Secrets Act 1989                       | 내무부 / NPSA<br>(구 CPNI) | § 1 보안 정보<br>유출 금지        | <a href="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6/contents">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6/contents</a>                             |
|          | Critical National<br>Infrastructure (CNI)       | -                      | -                         | <a href="https://www.npsa.gov.uk/...">https://www.npsa.gov.uk/...</a>                                                                               |
| 프랑스      | Code de la Défense<br>L.1332-2                  | 내무부 / ANSSI            | L.1332-2<br>중요시설 보호<br>조치 | <a href="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6071307/">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6071307/</a> |
|          | Infrastructure Critique<br>Protection (ICP)     | -                      | -                         | <a href="https://www.ssi.gouv.fr/">https://www.ssi.gouv.fr/</a>                                                                                     |

## 2.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비공개 방식 및 보안등급

| 국가   | 공개 원칙         | 보호 범위                     | 비공개 방식               | 보안등급 관리 체계                               | 특징 및 사례                         |
|------|---------------|---------------------------|----------------------|------------------------------------------|---------------------------------|
| 대한민국 | 원칙적으로 비공개     | 국가기반시설, 지하관로, 통신, 에너지 등   | 접근제한, 암호화 저장, 공문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 국가중요시설 구분                    | 긴급기관 요청 열람, 민간 제한               |
| 미국   | 법률상 비공개 (CII) | 국가중요시설, 통신, 에너지, 수도, 가스   | FOIA 예외, 정부내부망, 암호화  | CII, DHS 관리                              | Homeland Security Act, FOIA로 보호 |
| 독일   | 정보보안 등급별 비공개  | 전력, 수도, 교통, 통신, 공공시설 등    |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서버      | BSI Grundschutz 등급                       | 공공·민간 등급에 따라 엄격 보호              |
| 영국   | 국가안보 목적 비공개   | 전력, 수도, 통신, 군사, 교통, 금융 등  | 보안망, 물리적 통제, 비밀등급 저장 | CNI / OFFICIAL~TOP SECRET                | NPSA 통합 관리                      |
| 프랑스  | 법령상 비공개       | 국가 방호대상 시설, 에너지, 통신, 수도 등 | 정부망, 자료취급자격 필요       | Infrastructure Critique / Secret Défense | 국방부, 내무부 통제                     |

## 3. 국가별 공간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

| 국가   | 보안등급 체계(명칭)                                           | 등급 구분                                                                                                     | 주요 적용 대상             | 비고                 |
|------|-------------------------------------------------------|-----------------------------------------------------------------------------------------------------------|----------------------|--------------------|
| 대한민국 | 국가공간정보 보안등급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 ① 공개불가 (Strictly Confidential)<br>② 제한공개 (Restricted)<br>③ 부분공개 (Limited Disclosure)                      | 군사시설, 지하인프라, 국가기반시설  | 국가정보원 지침 준수        |
| 미국   | CII (Critic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 DHS 내부 등급 | ① For Official Use Only (FOUO)<br>② Controlled Unclassified Information(CUI)<br>③ Secret/Top Secret(필요 시) | 주요 인프라 정보 (전력, 통신 등) | DHS, NIST 가이드라인 참조 |
| 독일   | BSI Grundschutz 등급                                    | ① 보통 (Standard)<br>② 높음 (High)<br>③ 매우 높음 (Very High)                                                     | 공공·민간 인프라 데이터        | BSI 보호대책 가이드 준수    |
| 영국   | 정부 보안등급 / NPSA 기준                                     | ① OFFICIAL (공식적)<br>② SECRET(비밀)<br>③ TOP SECRET(극비)                                                      | 국가 인프라, 교통, 국방, 통신   | NPSA(CPNI) CNI 정책  |
| 프랑스  | 국방보안등급 (Défense nationale)                            | ① Diffusion Restreinte (제한적 열람)<br>② Confidentiel Défense(국방 기밀)<br>③ Secret Défense(국방 극비)               | 중요 시설, 인프라, 에너지망     | 국방법 / ANSSI 기준     |

#### 4. 국가별 공간정보 보안절차

| 국가   | 보안절차 흐름                                                                               | 주요 특징                              |
|------|---------------------------------------------------------------------------------------|------------------------------------|
| 대한민국 | ① 등급 지정 (지자체 / 중앙정부)<br>②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br>③ 접근권한 관리<br>④ 암호화 저장 / 폐기 절차                | 모든 공간정보는 등급별 분류 필수<br>정보유출 시 처벌 규정 |
| 미국   | ① CII 지정 신청 / 등록<br>② DHS관리 및 공유 제한<br>③ 내부망 보호 / 암호화<br>④ 필요 최소한 제공 원칙               | FOIA 예외 대상, 외부 제공시 사전검토 필요         |
| 독일   | ① 등급 평가 (BSI 기준)<br>② 보호조치 (기술/관리/조직)<br>③ 연 1회 이상 점검<br>④ 사고 발생시 즉시 보고               | BSI의 엄격한 보호 프레임워크 준수               |
| 영국   | ① CNI 지정 (NPSA)<br>② 정보 등급 부여<br>③ 정보접근 인가 관리<br>④ 보안 사고 대응 플랜                        | 접근자는 인가 등급에 따라 제한<br>열람 기록 의무화     |
| 프랑스  | ① 시설 / 정보 등급 지정 (내무부, ANSSI)<br>② 열람 / 사용 인가<br>③ 기술적 보호 (암호화, 폐쇄망)<br>④ 비상대응 프로토콜 운영 | 군·정부망 별도 분리, 보안관리자 지정 의무           |